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38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등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의원안)	3
2.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윤준병의원안, 정일영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12

I. 개요

1.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1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5. 8. 12.
- (3) 회 부 일 : 2025. 8.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더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이 특례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시장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업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 및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의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증가 인원당 공제금액을 200

만원씩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29조의8).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등(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제29조의4) ○ 기본공제(제29조의4제1항) ○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u>20%(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기본공제(제29조의4제1항) ○ (현행과 같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제29조의4제3항) ○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u>20%(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u>25%(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조지연의원안)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u> <u>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u> <u>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제29조의4제3항)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u>25%(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제29조의4제5항) ○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클 것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3.2% ('18.'19: 3.6%, '20.'21: 3.8%, '22: 3.0%, '23.'24: 3.2%)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공제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u>20%</u>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제29조의4제5항)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u>25%</u>(조지연의원안)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시행일: <u>2026. 1. 1.(김주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u> <u>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u>

* 김주영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44),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인선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398), 조지연의원안 2025. 5. 16. 발의(의안번호 10537),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각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추가 세액공제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모두 연장하는 것인 반면, 정부안은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조지연의원안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29조의4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로써, 2014년 세법개정 당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①근로소득 증대, ②배당소득 증대, ③기업소득 환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음.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 완화, 공제율 상향 등 지속적으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상기업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였음.

[근로소득 증대세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시기	개정내용
2015년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제29조의4제1항) - 공제요건: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공제금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중소·중견), 5%(대)
2016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제29조의4제3항) - 공제요건: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소), 10%(중견), 5%(대)
2017년	☐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 완화(제29조의4제5항) - 공제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시행규칙 규정)보다 클 것 ②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공제금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
2018년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일반 근로소득 증대세제(제29조의4제1항) 공제율: 중소기업 10% → 20%
2021년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1.1.1. ~ 2022.12.31.
2023년	☐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공제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2023.1.1. ~ 2025.12.31.

한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 2018년에는 133억원, 2019년 12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9억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감소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감소하였음.

[근로소득 증대세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1	4	20	36	42	53	67	44	37	38
법인세	93	129	104	73	70	108	160	99	84	86
합계	94	133	124	109	112	161	227	143	121	124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고용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민간소비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둘째, 동 특례는 2023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과 완화된 임금증가 요건 적용 등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지연의원안과 같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임금격차 해소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287.4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 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특례의 목표는 신규고용 창출 및 기고용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목표이지만, 세부담 감소가 익년도에 임금 및 고용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고 기업의 투자 혹은 사내유보를 증가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¹⁾

둘째, 동 특례가 임금 인상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평균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보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는 분석이 있음.²⁾

기업의 임금 인상은 인사·조직·재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점, 임금 인상규모 만큼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임금 인상분 대비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추가 증가분의 일정 비율 만큼 세액공제가 이

1) 기획재정부·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0.9. p.5

2) 기획재정부·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022.12.. p.176

루어져 공제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특례의 효과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기업이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제도 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대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정부안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공제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먼저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³⁾의 경우에도 2024년 일몰이 도래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있어 보임.

또한 법 제29조의4제5항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소기업 평균보다 임금 증가율이 높을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공제와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부안과 달리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 근로소득 중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중대세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요건) ❶&❷ 또는 ❷&❸ 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중대 지원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2.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에 대해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기본공제에서는 고용증가 인원당 세액공제액이 공제되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은 850만원, 지방은 950만원, 중견기업이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4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대기업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지방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됨.

2025년 3월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우대공제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어 경력단절자의 범위에 남성이 포함되었고,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추가되었음.

기본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지원되며, 2년 이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된 금액이 추정됨.

또한, 정규직전환자(2024년 말까지)와 육아휴직복귀자(2025년 말까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장기고용에 따른 공제액 인상구조 도입, 사후 추정규정 정비 등 제도 전면 개편(정부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고용기간에 비례한 점증구조 도입 및 사후 추정규정 정비 등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고용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단,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시행령 개정 예정):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기본</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우대근로자</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기본	850	950	450	-	우대근로자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 rowspan="3">기본</td><td>1년차</td><td>400</td><td>700</td><td>300</td><td rowspan="3">-</td></tr><tr><td>2년차</td><td>900</td><td>1,200</td><td>500</td></tr><tr><td>3년차</td><td>1,000</td><td>1,300</td><td>500</td></tr><tr><td rowspan="3">우대</td><td>1년차</td><td>700</td><td>1,000</td><td>500</td><td>300</td></tr><tr><td>2년차</td><td>1,600</td><td>1,900</td><td>900</td><td>500</td></tr><tr><td>3년차</td><td>1,700</td><td>2,000</td><td>900</td><td>-</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기본	850	950	450	-																																																																					
우대근로자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 우대근로자: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우대근로자: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사후관리: ①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 추정 ②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해당 연도부터 공제 종료					○ 사후관리: ① <삭제> ②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 배제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①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금액 점증구조를 도입하되, ②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⁴⁾ 초과 고용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③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추징규정을 삭제하며, ④ 공제 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하려는 것임.

□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할 경우 기업규모, 소재지역,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큼 매년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기간 중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전면 중지되며 감소한 인원 에 대한 공제금액 만큼

4)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개정 예정)

사후추징됨.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이 기업규모, 소재지역, 근로자 유형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등화하는 구조는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양호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 개시 이후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며, 고용인원 감소 시 공제액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보다 1년차 공제액을 줄이고 2년차·3년차 공제액을 늘리려는 것임.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공제금액 산출방식과 사후관리 방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고용 유지기간에 비례하여 공제금액이 증가하는 점증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장기고용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공제액 산출방식 비교]

(단위: 만원)

구 분		공 제 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기본	1년차	850	→	400	950	→	700	450	→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우대*	1년차	1,450	→	700	1,550	→	1,000	800	→	500	400	→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 우대근로자: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둘째, 사후관리 방식 개편을 통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한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사후관리 방식 하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연도 종료시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보다 사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여 사실상 조세의 탈루가 만연하고 경정청구 증가에 따라 국세청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최초 공제신청 및 수령 후 공제기간 중에 고용인원이 일부라도 감소할 경우 잔여 공제기간 동안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가 배제되므로,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과세연도 종료시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종적인 고용 증가 유지분만을 반영하여 사후 경정청구하는 것이 유리함.

예를 들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2년차에 일부 감소할 경우 매년 공제를 신청하는 것보다 마지막 시점에 공제를 신청하고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총 공제금액이 크게 나타남.

[정기신고와 사후 경정청구 간 공제세액 비교]

※ [예시] 현행법상 공제 2년차 고용 감소할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금액 비교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일반 상시근로자 고용 가정

1. T1에 법인세 신고하며 공제 신청시 → $3 \times 850 = 2,550$ 만원 공제

	T0	T1	T2	T3
상시근로자수	2	6 (+4)	5 ($\Delta 1$)	5 (-)
공제액	-	$4 \times 850 = 3,400$ (공제)	$1 \times 850 = 850$ (추징) 공제 배제	공제 배제

2. T3에 경정청구를 통해 일괄 공제 신청시 → $3 \times 850 \times 3년 = 7,650$ 만원 공제

	T0	T1	T2	T3
상시근로자수	2	6 (+4) → <u>5 (+3)</u>	5 (-)	5 (-)
공제액	-	<u>3</u> $\times 850 = 2,550$ (공제)	$3 \times 850 = 2,550$ (공제)	$3 \times 850 = 2,550$ (공제)

자료: 기획재정부

이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하게 상시근로자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법 제29조의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는 관련 경정청구가 2018년 약 200건에서 2023년 약 17,500건으로 증가하였음.

[법인세 경정청구 추이]

(단위: 천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6.3	7.4	10.2	13.8	16.6	26.2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	0.2	0.5	2.5	6.5	9.0	17.5

자료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이 모든 기업의 매 과세연도별 상시근로자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직·인력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참고로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4): 통합고용세액공제」 결과, 정기신고와 경정청구 시 공제액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고용 증가 인원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잔여 고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음.

셋째, 공제 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를 중단하고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계속해서 부여함으로써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고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하여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고용분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고용 증가분과 공제금액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는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5명으로 설정할 계획⁵⁾인데, 이를 가정할 경우 중견기업에서 1년간 10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고용인원 10명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인 5명을 차감한 5명에 대해서만 공제혜택이 적용되고, 1년간 5명의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공제금액은 0원임.

5)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각각 5명, 10명임.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 (중견) 5명, (대기업) 10명 ○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는 고용 증가에 대한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 채용시점에 따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매년 5명씩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3년간 총 15명의 상시근로자를 추가적으로 고용한 중견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1년 동안 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이후 해당 인원을 전원 해고한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도입에 따른 중견기업 간 공제액 비교]

구분	T0	T1	T2	T3	T3 기준 고용유지인원	고용창출
전체 상시근로자	3	8 (+5→+0)	13 (+5→+0)	18 (+5→+0)	15명	30단위
우대 (청년등)	2	7 (+5→+0)	12 (+5→+0)	17 (+5→+0)		
기본 (청년등外)	1	1 (-)	1 (-)	1 (-)		
공제세액(만원)	-	-	-	-	총 공제세액: 0원	

구분	T0	T1	T2	T3	T3 기준 고용유지인원	고용창출
전체 상시근로자	3	9 (+6→+1)	3 (-6)	3 (-)	0명	6단위
우대(청년등)	2	8 (+6→+1)	2 (-6)	2 (-)		
기본(청년등外)	1	1 (-)	1 (-)	1 (-)		
공제세액(만원)	-	500	-	-	총 공제세액: 500만원	
1차년도	-	(우대) 1×500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주: 추가고용 1단위는 1명이 1년 동안 기업에 고용되어 근무한 것을 의미

둘째,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공제액 추징규정을 삭제할 경우
현행 제도에 비해 고용을 유지할 유인이 감소하여 기업의 고용 확
대 지원을 위해 도입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정책효과가 감소할 우
려가 있음.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제 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개정
안에 따르면 근로자 해고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된 고용증대세액공제도 현행 제도와 유사
하게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데, 상시근
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시행 1년
후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었음.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 결과 사후관리
규정에 대해 ‘기존 고용이 신규 고용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 규정은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하였음.⁶⁾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심층평가(3):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1. 9.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공제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근로자 1인 추가 고용 시 공제액이 연평균 950만원에서 1,066.7만원으로 12.3% 증가하고, 청년 등 우대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현행 1,550만원에서 1,633.3만원으로 5.4% 공제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함.

또한, 수도권 중소기업과 지방 중소기업 간 연평균 공제액 차이가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수도권 대비 지방 중소기업 고용에 대한 세제상 우대가 큰 폭으로 강화됨.

[최대 공제기간 동안 고용 유지 시 연평균 공제액 비교]

	기본공제			우대공제		
	현행	개정안	증감	현행	개정안	증감
지방 중소기업	950	1066.7	+116.7 (+12.3%)	1550	1633.3	+83.3 (+5.4%)
수도권 중소기업	850	766.7	△83.3 (△9.8%)	1450	1333.3	△116.7 (△8.0%)
중견기업	450	433.3	△16.7 (△3.7%)	800	766.7	△33.3 (△4.2%)
대기업	-	-	-	400	400	-

이러한 제도 개편은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2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청년 등 우대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이미 한 차례 상향조정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넷째,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한 공제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일부 조문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취지대로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 -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로,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 -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로 계산해야 함⁷⁾.

그런데 개정안의 조문만으로는 이를 유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4

7) 청년등외상시근로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함

다. 청년정규직 등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 상향 (윤준병의원안, 정일영의원안, 한병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 상향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고용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 (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 (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 rowspan="5">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 colspan="4">*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td></tr><tr><td>1,650</td><td>1,750</td><td>1,000</td><td>600</td></tr><tr><td colspan="4">* 정일영의원안</td></tr><tr><td>2,900</td><td>3,100</td><td>1,600</td><td>800</td></tr><tr><td colspan="4">* 한병도의의원안</td></tr><tr><td></td><td>1,500</td><td>1,650</td><td>850</td><td>45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1,650	1,750	1,000	600	* 정일영의원안				2,900	3,100	1,600	800	* 한병도의의원안					1,500	1,650	850	45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1,650	1,750	1,000	600																																																												
	* 정일영의원안																																																															
	2,900	3,100	1,600	800																																																												
	* 한병도의의원안																																																															
	1,500	1,650	850	450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2025. 12. 31.	- 사후관리: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 12. 31.(한병도의의원안) - 2028. 12. 31.(윤준병의원안, 추경호의원안) - 2030. 12. 31.(정일영의원안) ○ 시행일: 2025. 1. 1. (윤준병의원안) 2026. 1. 1. (정일영의원안, 한병도의의원안)																																																															

현 행	개정안
	원안, 추경호의원안) ○ 적용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윤준병의원안)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부터(정일영의원안)

*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정일영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695), 한병도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92),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 개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 공제액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정규직 등의 채용을 촉진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 청년 고용률(44.7%), 장애인 고용률⁸⁾(33.8%), 60세 이상 고용률(42.6%)은 전체 고용률(OECD 비교기준)인 69.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약 122만명이며, 15~54세 기혼여성 중 15.9%를 차지하고 있음.

8) 2024년 5월 기준

[2024년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천명, %)

구분	15~54세 기혼여성	비취업여성	
			경력단절여성
규모	7,654	2,601	1,215
15~54세 기혼여성 규모 대비 비율	100.0	34.0	15.9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이와 같이 우대공제대상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대공제 대상 공제액의 상향은 기업에 우대공제 대상의 채용에 대한 유인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액공제액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2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청년정규직 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한차례 이미 상향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100만원에서 1,4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방 중소기업은 공제액이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둘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청년 등 채용 지원 사업 현황]

지원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 10만명 지원분(7,772억원 편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 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 75.6만명 지원분(3,774억원 편성)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추가지급(80만원)

문 의 처

02)6788-5154

라.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공제액 상향(최수진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공제액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상시근로자		935	1,093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공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현행 연 850만원에서 935만원으로 10% 상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연 950만원에서 1,093만원으로 약 15% 상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중소기업의 고용여력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같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대하여 더 높은 공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세수감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혜자 귀착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총 3조 8,106억원 중 3조 4,254억원 (89.9%)이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액 확대 시 세수감 규모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수혜자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법인				구분 곤란	합계
중소	중견	상출	기타		
34,254 (89.9)	2,389 (6.3)	562 (1.5)	901 (2.4)	0 (0)	38,106

자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문 의 처

02)6788-5154

마. 기본공제 적용기한 연장(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u>개정안별 공제율 상이</u>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중소(3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 <u>2025. 12. 31.</u>				○ 적용기한 - <u>2027. 12. 31.(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윤영석의원안)</u> - <u>2028. 12. 31.(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30. 12. 3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현 행	개정안
	○ 시행일 - 2025. 1. 1.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 2026. 1. 1.(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최수진의원안,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박정하의원안 2024. 6. 20. 발의(의안번호 702), 윤준병의원안 2024. 7. 22. 발의(의안번호 2065), 김정호의원안 2024. 9. 5. 발의(의안번호 3666), 정일영의원안 2025. 1. 22. 발의(의안번호 7695),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한병도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92), 김주영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46), 장철민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86),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84),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안, 김주영의원안 및 윤영석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안, 김정호의원안, 최수진의원안, 장철민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추경호의원안 및 정부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정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및 최기상의원안은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며, 세제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고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소득세	10,761	13,524	15,917	18,523	19,976
법인세	18,814	22,379	22,190	24,564	26,364
합계	29,574	35,903	38,107	43,087	46,340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둘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 지원 사업 현황]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근로자	지역고용 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 (대규모기업은 1/3) 최대 1년간 지원 - 2025년도 예산: 59억원
청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 - 2025년도 예산: 10만명 지원분(7,772억원 편성)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고용 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2025년도 예산: 75.6만명 지원분(3,774억원 편성)
고령자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 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 려금을 지원 - 2025년도 예산: 357억원 편성
경력단절 여성	고용유지장려금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 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 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지급(80만원) - 2025년도 예산: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 업에 고용유지장려금 추가지급(80만원)

셋째, 기업 규모별 또는 소재지별 공제액 변화의 차이를 이용한 분석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확대가 상시근로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⁹⁾

기획재정부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결과¹⁰⁾를 근거로 기업의 신규채용 의사결정에서 세제혜택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10) 수혜기업 심층면담시 기업의 채용 의사결정시 신규채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급여 등 비용적 측면을 고려할 뿐, 사전적으로 세제지원 제도를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고용을 확대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지원하고 있을뿐 신규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넷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¹¹⁾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마다 3년 또는 5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1)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바. 우대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 추가(한병도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에 지역균형인재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지역균형인재 등		1,500	1,650	850	45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2026. 1. 1.						

* 한병도의원안 2025. 2. 28. 발의(의안번호 8592)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12)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인 근로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비수도권(68.5%)보다 3.7%p 높은 72.2%로, 전년도 격차(2.7%p)보다 1%p 증가하였음.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률 차이가 확대되어 왔음.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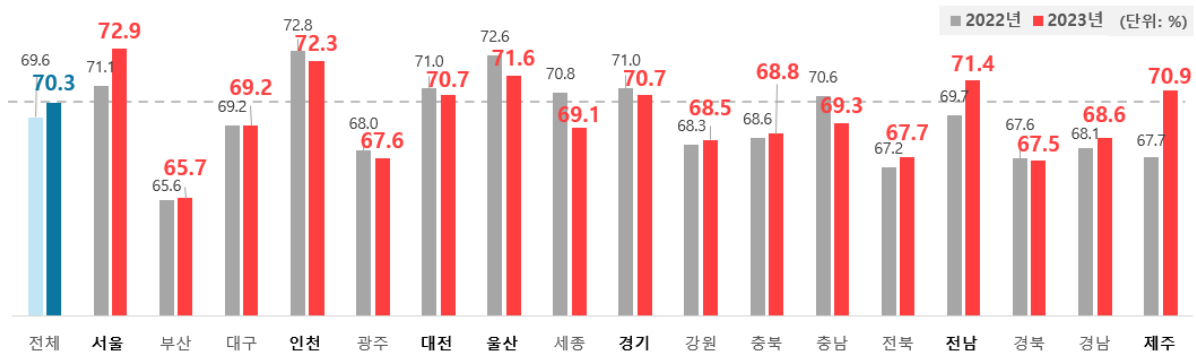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2023	수도권(A)	319,022	270,537	195,357	72.2
	비수도권(B)	327,040	283,744	194,311	68.5
	차이(A)-(B)	△8,018	△13,207	1,046	3.7
2022	수도권(a)	240,351	202,030	143,788	71.2
	비수도권(b)	317,688	277,543	190,121	68.5
	차이(a)-(b)	△77,337	△75,513	△46,333	2.7
2021	수도권(a)	233,571	196,949	137,382	69.8
	비수도권(b)	315,724	276,393	183,303	66.3
	차이(a)-(b)	△82,153	△79,444	△45,921	3.5
2020	수도권(A)	231,580	195,908	130,771	66.8
	비수도권(B)	321,941	284,241	181,659	63.9
	차이(A)-(B)	△90,361	△88,333	△50,888	2.9
2019	수도권(A)	227,265	194,841	133,764	68.7
	비수도권(B)	323,089	286,758	189,274	66.0
	차이(A)-(B)	△95,824	△91,917	△55,510	2.7

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률 차이(%p): ('16)1.6 → ('17)2.1 → ('18)2.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또한,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울산, 전남 등 7개 시·도는 평균 취업률보다 취업률이 높았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제주(3.2%p, 2023년 70.9%)로 나타났음.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개정안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대학을 졸업한 지역균형인재를 채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함으로써 대학의 소재지역에 따른 취업률 격차를 일부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기업에게 지역인재를 채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¹³⁾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30% 이상 채용해야 함.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¹⁴⁾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¹⁵⁾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35% 이상을 지역인재 중에서 채용할 경우 자금 조달이나 기술개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0%(2022년도 이후부터)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15) 단,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으로 제한하지 않음.

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현행법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청년등상시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현행 최고 수준인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때에도 수도권 내의 지역보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음¹⁶⁾.

문 의 처

02)6788-5154

1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정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사.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 연령요건 완화(최은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중 60세 이상 근로자를 55세 이상 근로자로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중소(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청년정규직, 장애인, 55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 최은석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0)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중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연령요건을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8제3항제3호에 따르면¹⁷⁾,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일반적인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 대비 350만원에서 600만원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정안은 우대공제 대상 고령 근로자의 연령요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어 보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¹⁸⁾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정의하면서 사업주가

1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8제1항제1호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고령자를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간 정합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의 비율은 69.9%이고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2.9세로 나타남.

개정안과 같이 55세 이상인 자를 추가 고용할 경우 통합고용세액 공제 상 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경우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연령]

(단위: 천명, %, %p)

		2025. 5		
		계	남자	여자
구성비	< 전 체 >	(11,226)	(5,201)	(6,025)
	30세 미만	6.4	0.9	11.1
	30~39세	6.5	5.3	7.5
	40~49세	15.2	16.0	14.5
	50~59세	37.2	38.4	36.2
	60~69세	30.6	35.6	26.3
	70~79세	4.1	3.8	4.4

자료: 통계청,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3조(고령자 기준고용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100분의 3

참고로 OECD는 고령자를 55세 이상 64세 이하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역시 해당 정의를 차용하여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고령 근로자의 연령 완화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68.8%에서 2024년 71.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고령자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5세 이상 전체인구	44,785	45,080	45,260	45,407	45,570
고령자 인구 비중	17.9	18.1	18.2	18.3	18.5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68.8	68.6	70.3	71.4	71.6
고령자 고용률	66.6	66.3	68.8	69.9	69.9
고령자 실업률	3.3	3.3	2.2	2.1	2.4

주) 고령자 대상: 55세~64세(OECD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55세 이상 59세 이하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60세 이상 대비 약 1.6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¹⁹⁾

둘째, 연령요건 완화 시 55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 우대공제를 적용받던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19) ○ 경제활동참가율('24년, %): (50~54세) 80.3 (55~59세) 77.4 (60세 이상) 47.3

○ 고용률('24년, %) : (50~54세) 79.0 (55~59세) 75.8 (60세 이상) 45.9

*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고령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른 조세특례 제도는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²⁰⁾는 65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하여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²¹⁾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 3년간 연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넷째, 현행 기준은 정년 도래로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놓인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정년인 60세²²⁾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아직 법적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60세 미만 근로자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54

²²⁾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상향된 공제액 적용(장철민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상향된 공제액 적용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중견</th><th>대기업</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h>(3년 지원)</th><th>(2년 지원)</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중견</th><th>대기업</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h>(3년 지원)</th><th>(2년 지원)</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td><td>1,450</td><td>1,550 (2,325)</td><td>800 (1,200)</td><td>400 (600)</td></tr></table>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재학·휴학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괄호 안의 1인당 공제액을 적용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2,325)	800 (1,200)	400 (6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	대기업																																																			
	수도권	지방	(3년 지원)	(2년 지원)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450	1,550 (2,325)	800 (1,200)	400 (600)																																																			
○ 적용기한: 2025. 12. 31.					○ 적용기한: 2028. 12. 31.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장철민의원안 2025. 7. 1. 발의(의안번호 11186)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 중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액의 1.5배를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우대공제는 청년정규직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증가인원 1인당 수도권 중소기업은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1,550만원이 적용되며, 중견기업은 800만원, 대기업은 4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지방 소재 학교 출신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1인당 2,325만원,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1,200만원, 비수도권 대기업은 600만원의 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액 대비 1.5배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지방 소재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 소재 대학을 졸업한 인재를 채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대학의 소재지역에 따른 취업률 격차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12월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비수도권(68.5%)보다 3.7%p 높은 72.2%로, 전년도 격차(2.7%p)보다 1%p 증가하였음.

[지역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p)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2023	수도권(A)	319,022	270,537	195,357	72.2
	비수도권(B)	327,040	283,744	194,311	68.5
	차이(A)-(B)	△8,018	△13,207	1,046	3.7
2022	수도권(a)	240,351	202,030	143,788	71.2
	비수도권(b)	317,688	277,543	190,121	68.5
	차이(a)-(b)	△77,337	△75,513	△46,333	2.7
2021	수도권(a)	233,571	196,949	137,382	69.8
	비수도권(b)	315,724	276,393	183,303	66.3
	차이(a)-(b)	△82,153	△79,444	△45,921	3.5
2020	수도권(A)	231,580	195,908	130,771	66.8
	비수도권(B)	321,941	284,241	181,659	63.9
	차이(A)-(B)	△90,361	△88,333	△50,888	2.9
2019	수도권(A)	227,265	194,841	133,764	68.7
	비수도권(B)	323,089	286,758	189,274	66.0
	차이(A)-(B)	△95,824	△91,917	△55,510	2.7

주: 수도권-비수도권 취업률 차이(%p): ('16)1.6 → ('17)2.1 → ('18)2.2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2년 한 해를 제외하면 매년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취업률 차이가 확대되어 왔음.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청년 인력을 고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차이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50.5%)’가 선정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 중 2번째로 필요한 중점과제로 ‘대폭적인 조세 감면(38.4%)’이 선정되었음.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쳐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기업에게 지역인재를 채용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²³⁾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를 30% 이

2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0.0%(2022년도 이후부터)

상 채용해야 함.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²⁴⁾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²⁵⁾로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의 35% 이상을 지역인재 중에서 채용할 경우 자금 조달이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우대조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2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25) 단, 지역인재의 범위를 해당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으로 제한하지 않음.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현행 최고 수준인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때에도 수도권 내의 지역보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1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고 있음²⁶⁾.

셋째,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보다 최대 775만원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에게 취업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청년의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신 학교가 수도권에 위치

26)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정서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한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54

자. 수도권 밖 소재 기업 공제액 확대(윤영석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수도권 밖 소재 기업 공제액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950</td><td>45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550</td><td>800</td><td>40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5. 12. 31.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4">공제액 (단위:만원)</th></tr><tr><th colspan="2">중소(3년 지원)</th><th rowspan="2">중견(3년 지원)</th><th rowspan="2">대기업(2년 지원)</th></tr><tr><th>수도권</th><th>지방</th></tr><tr><td>상시근로자</td><td>850</td><td>1,200</td><td>450</td><td>600</td><td>-</td></tr><tr><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td><td>1,450</td><td>1,700</td><td>800</td><td>1,000</td><td>400</td></tr></table>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사후관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2027. 12. 31. ○ 시행일: 2026. 1. 1.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1,200	450	6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700	800	1,0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지원)		중견(3년 지원)	대기업(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1,200	450	60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700	800	1,000	400																																								

* 윤영석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84)

☐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1인당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을 현행 1,55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150만원 인상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공제금액을 현행 9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50만원 인상하는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1인당 공제금액을 현행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공제금액을 현행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50만원 인상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50.5%)’가 선정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 중 2번째로 필요한 중점과제로 ‘대폭적인 조세 감면(38.4%)’이 선정되었음.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쳐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1인당 공제금액의 확대가 상시근로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율 목표로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²⁷⁾

둘째, 기존의 고용중대세액공제가 2022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세액공제액이 이미 한차례 인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우대근로자 1인당 공제액은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일반 근로자 1인당 공제액 역시 77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인상되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상대적으로 채용여건이 양호하고 취업 선호도가 높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54

27)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차.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현행					개정안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 <u>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인상 등</u> ○ (현행과 같음) ○ 개정안별 상이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중소(3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800	400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견		
	중소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u>1,300</u>		<u>900</u>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024. 12. 31. 육아휴직 복귀자:							

개정안		
○ <u>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인상 등</u> ○ (현행과 같음) ○ 개정안별 상이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상시근로자	850	950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1,450	1,550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1년 지원)	1,300	900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지원)	1,300 1,500 (정준호의원안)	900 1,100 (정준호의원안)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필요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현행과 같음) 육아휴직 복귀자:		

현 행	개정안
2025. 12. 31.	2026. 12. 31.(이용우의원안, 정부안) 2027. 12. 31.(서영교의원안) 2028. 12. 31.(최수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시행일: 공포한 날(최수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2026. 1. 1.(이용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준호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정준호의원안)

* 최수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5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1),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준호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71),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16. 발의(의안번호 13025),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시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또는 900만원(중견기업)을 세액공제하는 추가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공제세액을 20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공제제도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대상자에게 지급한 1년치 인건비에 대하여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이 적

용되었고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공제율이 인상되었음.

이후 본 조세특례는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가공제항목으로 재편성되면서 현행법과 같이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음.

또한, 개편 전까지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했던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복직 후 근무기간이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경우 1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2024년 들어 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반등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21	1.24	1.17	1.05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통계청

또한,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기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률 역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미상	15.7	15.8	13.4	14.3	13.1	16.5	14.2	17.6	13.8
4명 이하	10.8	10.4	10.7	10.1	11.3	11.8	11.8	17.1	18.8
5~49명	13.4	13.8	15.0	15.8	17.8	19.6	21.1	26.4	29.7
50~299명	13.9	14.8	17.0	18.6	20.9	22.8	24.8	29.9	32.3
300명 이상	25.0	26.2	28.0	29.6	30.5	31.7	32.9	36.2	37.4
계	19.1	20.0	21.6	22.5	24.0	25.5	27.0	31.2	32.9

주: 각 연도별 출생아 부모 중 해당연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나누어 100분율로 표시, 육아휴직대상자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자료: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출산의향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3.2%(남성 87.6%, 여성 89.1%)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로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등이 제시되었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별 동의 비율]

(단위: %)

구 분	전 체	남 성	여 성
경력 및 승진, 배치 등 불이익이 염려되어	89.1	87.4	90.9
사내논치 등 조직문화 때문에	87.4	84.7	90.2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소득감소 때문	84.6	84.4	84.8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79.2	82.6
경력유지, 커리어개발 등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서	79.1	72.2	86.4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66.0	62.9	69.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휴직기간 이후 복귀를 허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²⁸⁾의 경우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연간

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 도(소)매업, 금융업 등: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

360만원에서 최대 87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200만원 ¹⁾ 이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²⁾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³⁾	10만원	120만원

주 1)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2)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3)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정부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 연간 최대 1,840만원²⁹⁾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이 지원됨.

둘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제도 도입이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 5. (생략)

29) (정부지원금) 연 1,440만원 +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기업지원) 200만원 + (지자체, 근로자 지원) 최대 200만원

복귀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기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 종료를 목표로 축소 연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³⁰⁾

셋째, 기업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항구화된 제도로 인식할 경우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³¹⁾

문 의 처
02)6788-5154

30)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

31)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 9.